

정책제안서

□ 제안정책

제안정책	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(안)													
대상 (수혜자)	-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거주하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 -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													
소요예산	(미정)													
제안배경 (현황 및 문제점 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8년 ‘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위원회)’가 최초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16년째 운영되고 있다. - 현재까지도 ‘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위원회)’ 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. - ‘청소년참여위원회’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, 청소년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. -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청소년 위원으로 ‘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위원회)’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 등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명시했다.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. - 다만,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‘청소년참여위원회’가 조례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 지자체가 공식 기구로 인정하지 않거나 단순 보조사업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. 													
목적 (제안취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다. - .청소년이 제시하는 정책이 우리 지역의 미래설계는 물론 시대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. 													
세부내용	<p>□ 개요</p> <p>○ 현 행: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0개 / 유사 조례 4개</p> <p>- 2023. 7. 26. 기준,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및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은 총 14곳이다. [붙임 1] 참고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청참여</td> <td style="width: 35%; text-align: center;">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- 경기, 충남, 충북, 대전, 전남, 전북, 경남, 울산, 세종, 제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</td> <td>- 서울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</td> <td>- 인천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소년 기본 조례</td> <td>- 광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소년활동 진흥 조례</td> <td>- 강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없음</td> <td>- 부산, 경북, 대구</td> </tr> </table>	청참여	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	- 경기, 충남, 충북, 대전, 전남, 전북, 경남, 울산, 세종, 제주	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	- 서울	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	- 인천	청소년 기본 조례	- 광주	청소년활동 진흥 조례	- 강원	없음	- 부산, 경북, 대구
청참여	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		- 경기, 충남, 충북, 대전, 전남, 전북, 경남, 울산, 세종, 제주											
	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		- 서울											
	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		- 인천											
	청소년 기본 조례		- 광주											
	청소년활동 진흥 조례		- 강원											
	없음	- 부산, 경북, 대구												

□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(청소년참여위원회 부분)

제6조(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)

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·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<개정 2022.10.14.>

2.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

3.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·심의

③ 도지사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현황

1.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

[시행 2016.10.17., 제정 2016.10.17 조례 제2317호]

2. 속초시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0.10.16. 제정 2020.10.16. 조례 제2780호]

3. 원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2.12.30. 제정 2022.12.30. 조례 제2158호]

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유사 조례 현황

1.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05.16. 제정 2019.05.16. 조례 제2472호]

-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구성된 지역은 3곳이며, 유사 조례가 있는 곳은 1곳이다.

□ 필요성

○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제4항, 제5항, 제6항 내용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-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“청소년 자치권 확대라는 큰 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,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”라고 한 것이다. 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법적으로 두고 있지 못하여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들을 비교했을 때, 활동의 질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.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예산, 운영, 방향 등의 필요한 실정에 맞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별도 조례가 없기에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, 권한들을 많이 가지질 못한 것이 문제점이다.

여성가족부, (2023), 청소년사업 안내(1), (135P-137P)

○○시·도(시·군·구)2)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○○시·도(시·군·구)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‘청소년’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○○도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·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
2. 타 시·도 및 도내 시·군·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
3.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
4.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·의견 제안·행사 진행 등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○○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운영·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○○ 또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촉) ①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단,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회 활동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. 단,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% 내외로 한다.

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7조(해촉)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% 미만인 자
3. 범죄,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
4.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
2. 학교시험
3. 본인 질병과 사고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(喪) 또는 결혼
5.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개최) ①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(시·군·구-연 4회 이상)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	<p>제10조(의견수렴) ① 도지사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경비)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보상)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○○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, 문화탐방·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위탁)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운영규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기대효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에 담겨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(안) 참고 자료를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. - 이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조례를 추가하여 구성하고자 했으나, 이는 추후 관계자들과 협의를 더욱 진행해야 하며, 강원특별자치도청,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,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<p>참고문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성가족부, 청소년사업 안내(1), 2023 - 자치법규정보시스템,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2023 - 국가법령정보센터,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, 제4항, 제5항, 제6항, 2023 - 강원특별자치도청 사이트, (1)청소년참여위원회 안내 -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강원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, 2023